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342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전 문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경선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8. 12. 15. 접수 제668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1) 원고(C생)는 2008. 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소외 D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소외 F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각종 농업용 및 수산업용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7. 2.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에 이르게 된 경위

1) H 주식회사(피고의 분할 전 회사)와 F은 2000. 9. 30. 충남 I지역에서의 농업기계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계약은 H 주식회사가 자신이 생산하는 농업기계 등을 F에게 판매하고, F은 이를 다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또한, F은 H 주식회사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위 회사에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고, 위 회사는 위 담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이 정한 거래한도 내에서 F과 신용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소외 J, K, L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 계약과 관련된 F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와 D도 2008년경 충남 M지역에서의 농업기계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점계약의 주된 내용(담보제공약정 포함)은 앞서 본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며, 소외 F, N, O가 이 사건 제2 계약과 관련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2008. 12. 15. 원고(F의 배우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F, 근저당권자 피고'인 등기사항이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각 지급명령 신청

1) 피고는 2010. 6. 22. F, J, K, L 및 원고(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29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F을 상대로 지급을 구한 원본채권액은 총 311,886,294원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9. 15.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해 위 채무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주채무자인 F에 대한 확정일은 2010. 10. 5.이고, 보증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확정일은 2010. 11. 11. 이다).1) 2) 또한, 피고는 2010. 6. 22. D, F, N 및 O(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29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D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원본채권액은 255,739,300원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7. 1.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해 위 채무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주채무자인 D에 대한 확정일은 2010. 7. 21.이다. 이하 위 확정된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2) 3) 이후 피고는 2020. 11. 4. F, J, K, L 및 원고(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전10053호로 위 311,886,294원의 미수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F와 원고가 이의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합100200호로 그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다.

4) 또한, 피고는 2020. 11. 4. D, F, N 및 O(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차전10052호로 235,580,794원의 미수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D와 F이 이의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6164호로 그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다(이하 피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신청한 위 각 지급명령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후행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 피고는 F 소유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였고 또 F로부터 트랙터를 수거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자신의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의 위 피담보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8. 5.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121, 2013하면1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3. 8. 20.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위 피담보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완성, 면책결정의 확정 등의 이유로 모두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F, D에 대한 채권(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설정하여 준 것이다. 피고가 경매절차 등에서 위 피담보채권을 모두 회수하는 등으로 그 권리의 전부 만족을 얻음으로써 해당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전부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이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1)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0. 6. 22. 주채무자들을 상대로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각 선행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모두 확정된 이상(F에 대한 확정일은 2010. 10. 5.이고, D에 대한 확정일은 2010. 7. 21.이다),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게 되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등 참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및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0. 6. 16. F, D 및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P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2010. 6. 18.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1.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F, D 및 원고에게 2010. 6. 21. 위 경매개시결정정본이 각 송달된 사실, ③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2010. 11. 22.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고 주채무자들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된 때에 압류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3조 제4항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선행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2010. 11. 22.경까지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0. 11. 4. 이 사건 각 후행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상,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채무자인 F, D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위 면책의 대상이 된 채권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권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민

별지

- 1)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별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F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따른 미수금채권은 2007년경부터 2010년 5월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 F은 2010. 6. 16. 피고에게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 2)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별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D에 대한 계속적 거래에 따른 미수금채권은 2009년경부터 2010년 5월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 D은 2010. 6. 16. 피고에게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